

분양권 전매(배우자 공동명의)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

엘리프 창원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『주택법 시행령』 제73조 제4항 각호의 전매제한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절차를 안내하오니 계약자님께서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분양권 전매(공동명의) 안내

구 분	내 용
사전예약 및 문의	- 서류접수 예약 : 5월 20일(수) ~ 22일(금) - 예약방법 : 대표번호 전화 예약(055-606-1177) ※ 공동명의 서류접수는 예약세대에 한하여 진행하므로 반드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점심시간 12시~13시에는 예약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.
공동명의 서류접수	- 접수일정 : 5월 27일(수) 오전 10시 ~ 오후 4시 30분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구비서류 지참 필수) - 접수장소 : 엘리프 창원 견본주택(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68-1번지) ※ 구비서류는 아래의 안내 참조
유의사항	※ 본 공동주택은 『주택법』 제64조 및 『주택법 시행령』 제73조 제1항에 의거 입주자 선정일(당첨자 발표일)로부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됩니다. ※ 단, 『주택법 시행령』 제73조 제4항 각 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얻어 전매행위가 가능하며, 금번 명의변경은 동법 제73조 제4항 7호(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)에 의한 명의변경입니다.

■ 분양권 전매(명의변경)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

순서 및 절차	주요내용	구비서류	
		양도인(증여인)	양수인(수증인)
①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(계약자 진행)	-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 후 의창구청 검인 (민원지적과 지적민원팀) ※ 증여계약서는 계약자 직접 작성 (계약서 작성 대행 등 미지원)	1. 증여계약서 2. 공급계약서 원본 (아파트, 발코니, 유상옵션) 3. 신분증 4. 인감도장	1. 신분증 2. 인감도장
② 전매사유 심사 및 전매동의서 제출 (견본주택 방문)	- 양도인(증여인), 양수인(수증인) 방문 ※ 양도인 대리 불가 - 전매관련 서류 제출 - 전매동의 신청서 및 전매동의서 작성	1. 공급계약서 원본 2. 검인된 증여계약서 1부 3. 전매동의 신청서(견본주택 비치) 4. 주민등록등본(전체) 2부 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2부 6. 매도용 인감증명서 2부 (본인발급 /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) 7. 인감도장 및 신분증	1. 인감증명서 2부(본인발급) 2. 인감도장 및 신분증 [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] 3. 주민등록등본(전체) 2부 4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2부 [대리인 방문시] 5. 인감증명서(위임용) 1부 6. 대리인 신분증
③ 전매동의서 발급 신청	- 신청자 : 사업주체 - 접수처 : LH경남지역본부	※ 접수일로부터 15일 이후 동의여부 결정 통보	
④ 권리의무승계 및 계약서 수령	- 전매동의서 발급 및 권리의무승계내역 작성 및 계약서 불출 ※ 동의서 발급 일정 개별통보 예정		
⑤ 증여세 신고	-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 ※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신고		